

의안 번호	제2757호~제2758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6. 7. 15.(수) 10:00
제379회 임시회 제1차 관복위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: 2건(일괄 개정안)



관 광 복 지 위 원 회

목 차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
개정조례안 3
-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
일괄개정조례안 5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7호
- 제출일자 : 2026. 7. 6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6. 7. 7.

2. 제안이유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. 7. 1. 출범함에 따라, 1차 개정(2026. 5. 14.)에 이어 누락 사항 및 추가 정비 필요 사항을 보완하고 단계적 개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·직위 명칭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등

종 전 명 칭	변 경 명 칭	종 전 명 칭	변 경 명 칭
전라남도	전남광주통합특별시	전라남도지사	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
광주광역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	광주광역시장	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
도 세	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	도 비	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

○ 세부 변경 내용 : 25건

조	소 관 부 서	제 명	개정대상
1	기 획 실	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	별지 제1호서식
2		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	제2조
3		장성군 장성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	제10조제6항
4	인 구 경 제 실	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	제6조제1항
5	총 무 과	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	제4조제3항
6	문 화 교 육 과	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	제2조제1호
7		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	제2조제3호
8		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	제3조, 제14조제1호, 제2호가,다목
9		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	제7조제5항제2호
10		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	제2조제1항,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
11	주 민 복 지 과	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3조제1호
12	세 무 회 계 과	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	제3조
13		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	제2조제2항
14		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	제27조제4호
15		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제1호
16	지 역 개 발 과	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	제2조제2호,제4호 제5조,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, 제15조제2항
17		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·관리 조례	제7조제3항
18		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	제10조제3호
19		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	제6조제1항제2호 차목
20		장성군 삼계 1·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	제14조제1항
21		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	제4조제3항 제8조제4항제2호

22	농산유통과	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	제6조
23		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	제2조제2호마목
24	산림편백과	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	제2조제5호
25	맑은물관리 사업소	장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	제10조제2항, 별지 제1호서식

4. 관련법령

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(법률 제21446호)

5. 검토의견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전라남도”, “전라남도지사” 등의 명칭을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,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” 등으로 변경하는 등 관계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,
- 개정내용은 대부분 행정구역 및 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군민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으며,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맞추어 관계 조례를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- 근거법령 및 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8호
- 제출일자 : 2026. 7. 6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6. 7. 7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및 유관기관 명칭 등 용어·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규범 신뢰성 제고

3. 주요내용

- 제1장 법령불부합 조항 정비

가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

*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
나.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

*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제명 변경

- 제2장 조직개편 등을 반영한 유관기관 등 명칭정비

- 세부 변경 내용 : 5건

장	조	소 관 부 서	제 명	개정대상
1장	1	인구경제실	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	별지 제2,3호서식
	2	지역개발과	장성군 도시계획 조례	제50조
	3	맑은물관리사업소	장성군 하수도 조례	제22조, 제25조
2장	4	재난안전과	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제3조
	5		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	제3조

4. 관련법령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가목
- 「물환경보전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유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관계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개정내용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, 변경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는 한편, 조직개편에 따른 유관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근거법령 및 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759호
----------	--------

2026. 7. 15.(수) 10:30
제379회 임시회 제1차 건농위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: 1건(개정조례안 1)



건설농정위원회

목 차

□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3
---	---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9호
- 제출일자 : 2026. 7. 6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농산유통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7. 7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(안 제7조)
- 로컬푸드 인증(안 제18조)
- 인증의 취소(안 제24조)

4. 관련법령

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
 - 제9조제1항, 제2항(지방자치단체의 역할 - 안전성 검사 등)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0조(안전관리계획)
 - 제60조제2항, 제3항(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잔류조사)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7조 및 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·정비하여,
- 장성지역에서 생산·가공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임기, 로컬푸드 인증, 인증의 취소 조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임.
- 근거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, 현행 조례 조항 중 위원회의 “심의·의결” 기능과 회의 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서 일부 “심의·의결”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기준이 불분명해 질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을 명확히 하고 조문 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- 또한, 개정안에서 기존 제17조(시행규칙)를 삭제함에 따라 인증 신청절차·심사방법·표시방법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보칙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